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고 제2026-1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학교체육시설 개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 협약체결 및 보고 및 검사 등(안 제6조 및 제7조)

○ 표창(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3. 30. ~ 2026. 4. 6.(8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j@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